

第12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 4月 30日(火) 11時00分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8. 2001會計年度 決算檢查委員 選任의 件
9.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의 件

附議된案件

- | | |
|---|----|
|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
|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
|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
| 4.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
| 5.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
| 6.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
| 7.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安載弘議員 外 5人 發議) | 2面 |
| 8. 2001會計年度 決算檢查委員 選任의 件 | 6面 |
| 9.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의 件 | 6面 |

(11時00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각 안건별로 심의 의
결한 후에 2001會計年度 決算檢查委員 選任의 件
을 의결하고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
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
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
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
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
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安載弘議員 外 5人 發議)

(11時07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市民行政委員會 李憲九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憲九議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새로 부임하신 李老根 區廳長權限代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청명(淸明), 한식(寒食)이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제4항에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

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제5항에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상에는 결근이나 정직 및 직위해제와 마찬가지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직접 공제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 3월 28일 시달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면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총무과 소속이던 동행정업무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팀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에서 종로구 지명위원회 중 간사와 서기를 각각 “총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동 행정업무담당주사”에서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총무과 소속이었던 동행정업무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 중 제6조의 위원회 당연직인 간사와 서기의 직명을 개정된 직명에 맞추어 조례의 문안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행정업무팀”을 “자치행정업무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동 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령의 규정과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고시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으로 하며, 또한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세부기준 및 방법으로 특별정비사업에 의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되어 자치구의 고유사무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 도모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구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금리가 인근 자치구와 서울시의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시중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대

출금리를 인하하고 융자한도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면서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요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용자범위 중 사용시설비 및 공급시설비 “70%” 이내를 “80%” 이내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호에서 사용시설자금 및 공급시설자금이자율을 연리 “6%”에서 “3%”로 각각 인하하였고, 부칙 제2항에서는 기 대출된 융자금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보급을 향상을 위하여 당초 정책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대폭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금리가 현재 시중금리가 저금리 추세로 인하여 6% 내지는 8%대에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사업기금 대출금리 6%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 기금 융자금 활용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당초 기금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 활용도를 증대시켜 도시가스 보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사업기금 금리의 인하조정 및 융자한도 확대 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인근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는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1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증원하여 우리 구 환경 보전업무 추진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단체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1조에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원 “1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원 중 환경보전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 8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시민단체 등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뿐으로 이는 조례 제21조의 「구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이어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원은 20인 내외로 개정하여 환경전문가,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운용 관리 중인 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제3조의 기금 사용용도에 부상자 치료를 추가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시 기금지출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금의 용도 중 “인명구조” 외에 “부상자 치료”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위해로부터 보장받으려는 심리가 주민들에게 증대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1년 9월 29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재난시 부상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 발생시 부상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以上 6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安載弘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安載弘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安載弘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해주셨으므로 본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본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경우는 예산편성 전인 2001년 11월 25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02년도에 추가 매입할 토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 내용은 구립

운동장과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구립 운동장과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건립에는 공감하였습 니다만 취득재원이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 업이고 입지선정도 100년 대계를 내다 봐야 하는 중 대한 사업이므로 관련자료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심사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요구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 거전용지역 내에 납골당시설의 설치를 관련법이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선진사회의 장 묘문화 변천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매장및묘지에 관한법률」을 2001년 1월 21일자로 「장사등에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매장문화에서 화장 및 납 골문화로 시행하여 불필요한 국토의 훼손과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와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전 용 지역 내에서도 종교시설 안에는 납골당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상 보완해야 될 점은 시·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 등에 일 부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납골시설 관 련 규정은 주거전용지역 내에서 일부 근린생활시 설에 타종 및 옥외 확장장치가 있는 곳에는 납골 시설의 설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한사항에 진작 제일 중요한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 차원 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건폐율이나 용 적률 등에 상당한 사권의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제 도화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는 이런 예 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경관지구 지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도 납골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입법 취지와 자연경관 지구의 지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조례에 자연경관지구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자

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요구(안)입니다. 주 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제2항제3항 '가'목의 종 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 다」를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연경관지구가 아니고 타종시설 및 옥 외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로 개정을 요구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가 건의요구(안) 대로 개정됨으로서 자연경관지구의 쾌적한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납골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을 완화하여 오히려 납골문화를 확산시 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제 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 都市計劃 條例改正 建議要求(案) 結果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 路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11時32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8항 2001회계년도 결

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2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宣相善議員, 위원으로는 정은용 공인회계사와 전승만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宣相善議員과 정은용 공인회계사와 전승만 공인회계사가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의 件

(11時34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구정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국장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생활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많은 연구를 토대로 구정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위원회 洪起瑞 幹事님께서 혜화초등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혜화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종로구민의 오랜 숙원인 구민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2002년 2월 15일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청에 부지매입 요청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삼성재단이 상기부지를 매입해서 성균관대 기숙사를 건립하려 한다는 사실은 중부교육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거가 없는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2002년 3월 8일자 예상호 외 783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종로구민의 구립운동장 건립에 대한 열망과 소규모 임대업이나 하숙집 운영을 통해 생활하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더불어 전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창신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및 교육여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신 창신동 23번지 일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활용관련 사항은 현재 중부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업무협약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혜화초등학교 부지에 구립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福同議員님께서 현재 사용 중인 종로 5,6가동 청사를 향후 신청사로 동사무소를 이전한 이후에 중부지역에 육아 및 탁아를 위한 시설이나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효계동 173-2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528㎡의 신청사가 2002년 5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과 보건소 설치문제는 신청사가 이전한 뒤에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분소 설치 문제는 의료진의 추가확보와 시설보완 등 선결과제가 많아서 당장 설치하는 어려운 실정임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李炯述議員님께서 종로지역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지역을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북촌과 인사동을 연계해서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며, 기무사 이전지에 왕궁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계획과 원서공원에 전통혼례식장을 만들어 종로의 관광명소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李炯述議員님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남다른 문화사랑으로 지역문화 보존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李 議員님을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종로구가 문화일번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를 보존하고 종묘제례, 사직대제, 종로거리축제, 인사동축제 등 전통과 현대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사대문 안에 역사탐방로를 계속 조성 중에 있으며 북촌마을, 인사동, 창덕궁, 대학로 더 나아가서는 세검정 문화유산 등을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도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 예정인 국군기무사부지 활용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주변 시설과 어울리는 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북촌마을 가꾸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원서공원에 전통혼례식장 설치 문제는 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원서공원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현대건설 측의 비협조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에 현대건설을 설득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전통혼례식장을 설치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千相旭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청장실 규모와 근무인원을 감축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시면서 실질적인 행정개혁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구청장 직무실은 단순한 사무 공간보다는 다수의 민원인과 구민이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청장실 직무실 면적은 행정자치부의 사무실 면적설계 기준에 관한 준칙에서 제시된 규모보다도 적은 면적이고 근무인원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신임구청장 부임 이후 더욱 간소한 구청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행정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玄壽漢議員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으로서 불법 무허가건물의 증·개축 문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 도로파손 복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은 범정부적 시책의 하나로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이 사실로서 저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에 문제점을 보고하고 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동기능 전환의 시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견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정원 162명보다 72명을 증원해서 배치하는 한편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물 적발은 전 구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불법주차단속은 주차단속요원 이외에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배치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손된 도로보수도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에게 즉시 보수토록 하여 적극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鄭泰淳 運營委員長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임기 전에 퇴직을 한 이후의 구정수행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퇴직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각되며 현재 李老根 副區廳長님께서 4월 13일자로 부임해서 구청장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서울시청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금천구청에서 3년간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신 바 있는 행정전문가로서 현재 구정 전반에 걸친 현황과악은 물론 각 동 순시를 겸한 순찰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연간계획은 물론 월드컵 대비, 지방선거 대비 등 당면업무에 공백 없이 구정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鄭泰淳 委員長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鄭泰淳 委員長님께서 세계적인 대축제인 월드컵과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한정된 인원과 기간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행사준비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월드컵 준비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3개 분야 35개 단위사업을 주기적으로 총괄 점검하는 한편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5월 초순까지는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될 월드컵 관련 업무는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머물게 될 월드컵의 지정과 관리, 또 외국 관광객이 이동하게 될 동선의 환경정비, 그리고 대학로와 인사동 지역의 환경정비,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을 잘 마무리해서 월드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또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별도의 선거준비 추진반을 만들어서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정비, 투표소 확보 등 일정별로 관

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거업무가 법정업무임을 감안해서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鄭泰淳 委員長님께서는 우리 구를 내방하시는 민원인을 위해서 부족한 구청의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차수용 능력은 148대이나 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권이나 민원인이 방문하는 실정으로서 실제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개의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수용능력을 높이고 미국대사관 주변 노선주차장을 설치해서 대형 행정차량을 분산 주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자가용 운행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청사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서 행정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전원 사용하며 민원인이 사용할 주차공간을 넓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李東奎 議員님께서 창신3동 청사 신축 건물 중심에 대형기동이 설치되어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창신3동 신축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신 李東奎 議員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신3동 신축은 주변지역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하고 낙후된 동청사를 문화, 복지, 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최신식 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청사 내에 대형기동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형기동은 건물 구조상 부득이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또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공업체가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계속적으로 李東奎 議員님과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동사무소로 완공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董連浩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안녕하세요? 生活福祉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서 답변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남골당 설치와 관련해서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평창동 지역의 주민들이 남골당과 관련해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고 여쭙보셨습니다. 아울러 평창동 417-3호 건축공사와 관련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선 남골당과 관련한 법규정의 문제점 및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417-3호 개별적인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주민들께서 남골당 문제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委員長님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령을 준수하고 또 법령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저희 구청의 입장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서울시의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 처리할 수 없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리와 남골문화 장려를 위한 정부 정책이 상충되어 발생한 문제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현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로 개선하자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는 매우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적인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종전용주거지역이나 자연경관지구 내에도 납골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다 보니 주택과 종교시설이 인접되어 있고 또 종교시설이 밀집해 있는 평창동과 같은 경우에는 납골당 설치로 인한 주거권 침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문화도 장려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제한규정을 두거나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상세한 시설기준을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요구(안)을 제출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련 부서끼리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주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재 인왕산정 경로당이 너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노인정시설을 주민들과 또 연립주택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에 통인시장 근처에다가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포함하는 복합건물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노인문제와 맞벌이의 육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현재 인왕산정 경로당은 고지대에 있어서 통인시장 근처의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왕산정 경로당을 상시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분 되고 그 독지가가 수시로 경로잔치를 열어서 노인분들에게 상당히 사랑받는 장소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왕산정 경로

당을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왕산정 경로당을 활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왕산정 경로당과는 별개로 통인시장 근처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마련하는 문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혼자 자동에만 구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 등 총 4개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과연 추가 보육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좀 면밀하게 보육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통인시장 근처에 경로당을 이용할 노인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宣相善議員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나 신고하지 않고 버려진 대형폐기물 등이 제때 수거되지 않고 있으니 기동반을 가동해서라도 적기에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늘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덕분에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의원님 지적대로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종량제는 원칙적으로 종량제봉투만 수거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차수거 때는 원칙적으로 무단투기 쓰레기나 신고하지 않고 몰래버린 대형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수거 시까지 일시 적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원칙적으로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만 수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화요일과 금요일만 배출을 해야 하는데 미리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수거 때까지 다소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저희 구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만 저희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 여러분께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분리배출을 해주시고 지정된 날짜, 지정된 시간을 지켜서 배출해주시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동네도 한결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이 돼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심하셔서 감시자로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동반 가동 문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동반을 좀더 보강해서 송인, 창신동 등 대항지역에는 수시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적치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東奎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창신3동의 쓰레기 대행업체의 수거능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이면 능력있는 업체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주셨고, 또 가로노선별 미화원 배치현황을 알려주고 지봉로변에 미화원을 배치해서 재활용품 수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미화원 숫자라든지 연령, 미화원의 잦은 교체 여부, 동력수레 조작능력 등 청소작업 과정 하나하나를 일일이 의원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관찰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큰 자료가 되겠습니다. 창신3동 지역의 청소대행을 맡고 있는 심창기업은 현재 차량 15대, 운전원 8명, 미화원 25명을 고용해서 창신3동 지역을 포함해서 창신2

동, 명륜3가동과 해화·사직·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일부 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서 상에 미화원 수나 미화원의 연령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원수나 연령을 가지고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화원의 잦은 교체나 미화원의 청소능력 그리고 종량제봉투나 재활용품에 대한 적기 수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거능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시정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업체나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 연간 청소예산이 약 1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청소관련 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해서 자립률이 12%입니다. 따라서 대항지역을 모두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자면 연간 최소 150~200억원 정도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李東奎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행업체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우선 수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수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노선별 미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여쭙보셨는데 현재 송인가로에 25명, 광화문가로에 30명, 연지가로에 25명 등 8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송인가로에 배치된 25명이 종로5가에서 왕산로, 그 다음 동구간의 청계로 구간, 지봉로 및 12m이상의 지상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봉로는 현재 송인가로환경미화원 관할구역인데 재활용품을 포함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으나 쓰레기 배출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는 등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쓰레기가 적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지봉로변의 쓰레기 적치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직접 관찰하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인 만큼 저희 구청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보강 투입을 해서 쓰레기 적치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고견을 주신 것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河徹昇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義振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黃義振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以煥議長님! 그리고 金正大副議長님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炯述議員님께서 북촌마을가꾸기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을 정해났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종로가꾸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은 李炯述議員님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로 총 84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옥 등록시에 담당직원이 우리 구에 보관중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대상한옥 총924동 중 현재 157동을 한옥 등록처리하고 25동은 개·보수 완료하여 7억원의 개·보수 용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51동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과 용자금 14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9월말 북촌마을의 가로환경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님께서 남골당 문

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앞에 포괄적인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화정사가 남골당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주민의 원성을 받아온 평창동 417-6호 기존 건물에 대한 그간 민원처리과정과 공사중지기간 중에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평창동 417-3호 건축물의 공사경위 그리고 평창동 417-6호의 불법적인 건축행위로 인하여 동일한 건축주인 417-3호의 건축허가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내 남골당 설치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제3호 가목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화정사는 평창동 417-6호 및 417-3호의 별동으로 2개 동의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28일 평창동 417-3호 지상의 기존 건축물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3.67㎡ 주택에 대하여 지하3층, 지상1층 연면적 427.5㎡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증축 허가된 사항으로서 위 지역의 도시계획 사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구지이며 증축허가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이 남골당이 설치될 것을 우려하여 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증축공사는 지하터파기 안전시공이 미흡해서 2002년 4월 12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조치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와 건축법규에 따라서 남골당 설치가 가능한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이 제출될 경우에는 주민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정서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해서 용도변경이 처리되지 않도록 생활복지국장님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주민의 원성을 받아온 평창동 417-6호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간의 민원처리 과정과 공사중지 기간

중에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평창동 417-3호 건축물의 공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창동 417-6호는 지하1층은 주방 72㎡ 및 417-3호 연결부분 22㎡가 무단 증축되어 그동안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1층 부분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연결부분만 남은 상태이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 고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정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417-3호의 기존건축물의 발코니 무단 증축부분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위법사항은 해소된 상태이나 지하터파기 공사의 안전시공이 미흡하여 안전공사 완료 시까지 본 공사는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17-3호 증축허가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동일한 연화정사 본 건물이 있는 평창동 417-6호의 건축물 위반사항을 사유로 증축 허가지인 허가를 받은 평창동 417-3호의 건축공사중단 및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대지상에 별도의 건축물이 건립된 사항으로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 417-3호의 증축허가 철회가 불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에 대하여는 경관이 수려한 주거전용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납골당 설치가 불가하도록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조금 전에 가결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千相旭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千相旭議員님께서 전망이 아름다운 북악산을 절반 정도만이라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11월경 육군 제1296부대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삼청공원에서 말바위까지의 구간은 청와대와 1km 떨어진 산림지역으로서 산책로로 개방 시에는 가장 가까운 사정권이 되어 당국에서는 특정 지역 경호상 문제 때문에 개방이 불가하다는 회신

을 저희 구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관계자와 구정질문을 받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본 결과 금번 수도방위사령부 총기탈취사건에 따른 군 경계태세 강화로 산책로 개방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삼청공원 위쪽에 노후 펜스 보강과 CCTV 설치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북악산 개방문제는 장기적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千相旭議員님께서 자연경관지구, 종전의 용어로는 풍치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제하는 종로구의 추진과정을 밝혀줄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총면적 229만 650㎡ 중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4개 지역 2만 7,626㎡는 자연경관지에서 해제하고 12개 지역 6만 8,338㎡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1년 1월 29일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2001년 5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나 건축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구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서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 내 소재하고 있는 평창동 148-21 평창연립은 2002년 1월 21일 석축 및 담장이 붕괴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건물이 추가 붕괴위험이 있어 2002년 2월 8일 건축규제완화를 재요청하여 2002년 3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완화하도록 심의 결정되어 재건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왕산에서 북악산길 산책로변 일부 구간에 향나무가 제거되고 뱀나무가 식재되었으며, 산책로 일부 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토사유출 및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직공원에서 청운아파트간 1.8km의 산책로 길은 IMF 직후인 '98년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아카시아분량목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인왕산길에서 북악산길 쉼스를 철거하고 가드레일 소나무 등 수목을 식재한 바 있으나 일부 구간에 토사유출이 우려되어 금년에 시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구간에 석축 산책길 등을 5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도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원받아 토사유출 보호용 수목인 싸리나무, 집합나무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산책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鄭泰淳 運營委員長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아파트 잔류가옥 130세대가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鄭泰淳 運營委員長님께서 청운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운아파트는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아파트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리되고 있으며 가옥주 557가구 중 82%가 이미 보상금 수령 후 타지역으로 이주하였고 102가구만이 보상을 거부하며 재건축 또는 현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鄭泰淳 運營委員長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 소유권이 있는 서울경찰청에서도 부지 매각의사가 전혀 없다고 통보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 7월 12일에 서울시에서 청운아파트 부지 전체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재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李東奎 運營委員會 幹事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망터널 우회도로 백지화 및 냉각탑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李東奎議員님이 질문하신 동망터널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할 것과 현재 냉각탑 이전문제에 대하여 건의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망터널 우회도로는 '93년 12월 16일 도시계획

로 결정되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추진 과정에 당초 설계내역이 굴곡이 심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가 부족해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응벽설치로 인한 주변가옥 고립문제도 발생하고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현재와 같이 선형을 변경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선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우리 구에 사전 협의 없이 시행된 것에 대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간 李東奎議員님께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당초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교통량 분석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는 서면답변을 저희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 담당과장과 국장은 앞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냉각탑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6호선 창신역사 터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탑 이전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승인제4주택재개발구역으로 이전코자 검토 중에 있으나 2001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중인 구역으로 이전코자 할 경우에 재개발사업계획변경 건은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여부를 포함한 부지사용 문제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선 승인주택재개발조합과 협의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방문,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黃義振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입니다. 앞서 여러 국장님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좋은 인사말씀이 있어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議員님이 질의하신 효제동과 종로5.6가동의 배수관 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방대책 전까지 저희들이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한 이후에 그 지역의 노후된 기존 하수관에 대해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개량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炯述議員님이 질의하신 정독도서관 및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도서관 및 학교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실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도시환경개선기획단에서 북촌가꾸기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의 하에 추진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李憲九議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청운동 56-70 내지 신교동 2-48간 도로개설을 요구하셨고 또한 인왕산 도로와 옥인아파트 5동 1동 사이 도로개설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옥인동 해맞이동산 인접 구릉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검토한 바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경관지구와 인왕산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가파른 산복지역입니다. 또한 본 구간의 표고차가 클 뿐만 아니라 즉 단차가 클 뿐만 아니라 지반이 암반이고 자연 수목이 잘 형성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건설은 공원조성계획 즉 인왕산자연공원이 공원조성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검토해본 결과 건설 과정에서 자연 수목이나 이러한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단차가 커서 도로 및 주차장 진입로 건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점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宜相善議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인동 58번지 일대 도로포장 요청 구간은 폭 4m 연장 60m로서 연초에 현장조사 결과 사유지로 확인되어 검토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하수관 부설은 건축 당시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유지의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공사 시행시 각종 이익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기부채납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 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2항에서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국장들의 답변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보충답변이나 추가질문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까라는 임시회 구정질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국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千相旭議員 議席에서 - 議長! 2분만 시간을 주시오.)

○議長 金以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을 부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

린 바가 있습니다. 항상 수해지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항상 안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 바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3시 55분 경에 평창동 154번지 33호의 신축건물 용벽이 무너지면서 이재민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먼저 해당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신 우리 安載弘 委員長과 李老根 區廳長權限代行者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서 가지고 원상복귀하는 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時34分 閉會)

○出席議員數 18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副區廳長 李老根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財務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健所長 鄭有珍